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hina

신 찬 호**

Shin, Chan-Ho

《 목 차 》

I. 서 론

II.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특징

III.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제도

IV.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V. 결 론

[국 문 초 록]

중국은 세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이 가장 풍부한 나라중 하나이며 그 종류가 다양

┃투고일자: 2022년 10월 20일 ┃ 심사일자: 2022년 11월 21일 ┃ 게재확정: 2022년 11월 21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3842).

** 국민대학교 법학 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활용에 있어서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민족 및 공동체, 지역의 우수한 문화의 전통을 전승시키고,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각국 국민의 창조력을 발휘시키고,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인류의 상호 소통, 상호 이해, 상호 단결을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유형문화유산만으로는 민족의 문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전통문명의 연속성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으로 전승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일정한 형체가 없이 전승되어 온 것이므로 인간에 의해 보호, 전승되기 때문에 원형이 훼손되거나 변질·변형되기 쉽다.

무형문화유산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승과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서는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잘못하면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은 점차 약화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특징,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제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유형문화유산.

I. 서론

급변하는 시대에서 각국은 자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에 의하여 형성된 유산으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향유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민족 및 공동체, 지역의 우수한 문화의 전통을 전승시키고,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각국 국민의 창조력을 발휘시키고,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인류의 상호 소통, 상호 이해, 상호 단결을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유형문화유산만으로는 민족의 문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전통 문명의 연속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으로 전승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일정한 형체가 없이 전승되어 온 것이므로 인간에 의해 보호, 전승되기 때문에 원형이 훼손되거나 변질·변형되기 쉽다.

중국은 세계에서 무형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產)이 풍부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8월 28일 제 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유네스코(UNESCO)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비준하여 12월 2일 유네스코에 비준서를 제출함으로써 여섯 번째로 비준서를 동의한 국가가 되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에 가입하면서 문물보호법(文物保護法)에 포함되었던 민족민간문화의 명칭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가속화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문화권에 포함되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두 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의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특징,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제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특징

1.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과 대조되는 것으로 일정한 형체가 없이 인간에

의하여 재현된 기술 및 예능으로서 후대에 계승 또는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유네스코는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였는데,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제2조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 또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이 정의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유산을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b) 공연 예술 c) 자연과 우주에 관한 사회적 관습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e) 전통 기술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²⁾

중국의 경우 2011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³⁾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각 민족이 대대로 계승하여 그 문화유산의 구성부분으로 간주하는 각종 전통문화 표현형식과 전통문화 표현형식과 관련된 실물과 장소로 정의 하고 있으며, 이 정의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유산”을 (1) 전통적인 구두 문학 및 그 매개체로서의 언어; (2) 전통미술, 서예, 음악, 춤, 연극, 곡예 및 곡예; (3) 전통적인 기예, 의약 및 역법; (4) 전통 의례, 절경 등 민속; (5) 전통 스포츠와 놀이; (6) 기타 무형문화유산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⁴⁾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분류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과 유사하다. 무형문화유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민속학자들과 민족민간문화예술 연구원들은 중국 실정에 맞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정번호체

1) 한국, 일본, 대만 등은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외교부(https://overseas.mofa.go.kr/unesco-ko/brd/m_8654/view.do?seq=772412)

3)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2011년 2월 25일 발표를 통해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고양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보존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4) 第二條 本法所称非物質文化遺產，是指各族人民世代相傳并視爲其文化遺產組成部分的各种傳統文化表現形式，以及与傳統文化表現形式相關的實物和場所。包括：（一）傳統口頭文學以及作爲其載体的語言；（二）傳統美術、書法、音樂、舞蹈、戲劇、曲藝和雜技；（三）傳統技藝、醫藥和歷法；（四）傳統禮儀、節慶等民俗；（五）傳統体育和游藝；（六）其他非物質文化遺產。

계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무형문화유산의 분류에 대하여 통일되고 명확한 분류는 없고,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차원에서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王文章의 「非物質文化遺產概論」⁵⁾에서 제시한 13가지 분류법, 向云駒의 「人類口頭和非物質遺產」⁶⁾ 중 4가지 분류법, 周耀林 등이 “論我國非物質文化遺產分類方法的重構”⁷⁾의 논문에서 제시한 거시적, 중화적, 미시적 분류법 등 무형문화유산의 분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중 업계에서 비교적 많이 인정받는 것은 王文章의 13가지 분류법으로 ① 언어, ② 민간문학, ③ 전통음악, ④ 전통무용(傳統舞蹈), ⑤ 전통연극(傳統戲劇), ⑥ 곡예(曲藝), ⑦ 잡기(雜技), ⑧ 전통무술, 체육과 경기(體育與競技), ⑨ 민간미술, 공예미술, ⑩ 전통수공기예(傳統手工技藝) 및 기타 공예기술, ⑪ 전통 의학과 약학, ⑫ 민속(民俗), ⑬ 문화공간이다.

지정번호의 주요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작업을 규범화하고, 조사종목에 대한 규범화된 기록과 자료수집에서 얻은 자료들을 규칙적으로 등록 및 보관하여 합리적인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⁸⁾⁹⁾

2. 정부 주도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는 정부 주도 원칙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다. 정부 주도 원칙에 의하여 진행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2004년 중국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하면서 부터이며, 무형문화유산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과 성(省)·시(市)·현(縣)급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5년 3월 국무원 관공청(國務院辦公廳)은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업무 강

5) 王文章, 「非物質文化遺產概論」, 文化藝術出版社, 2006.

6) 向云駒, 「人類口頭和非物質遺產」, 寧夏人民教育出版社, 2004.

7) 周耀林, 王咏梅, 戴咏, “論我國非物質文化遺產分類方法的重構”, 「江漢學術」 第31卷 第2期, 2012.

8) 中國藝術研究院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國家中心編, 「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普查工作手冊」, 文化藝術, 2005, 19頁.

9) 한국의 경우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①전통적 공연·예술 ②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 구전 전통 및 표현 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⑦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무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참조).

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強我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意見)을 발표하였는데,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의 목표와 가이드라인,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여, 사회의 노력을 통해 비교적 완비된 중국 특색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사회의 소중하고 위협에 처한 역사적·문화적·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도방침은 보호 위주, 응급처치 우선, 합리적 이용, 전승 발전이며, 기본 원칙은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책무 명확화, 협력 형성, 장기적 비전, 단계적 시행, 점면적 결합, 실효성 추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급, 성·시·현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작목록(代表作名錄) 체계를 세워 중국 특색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대표작목록은 국무원이, 성·시·현급 무형문화재 대표작목록은 동급 정부가 이를 승인하여 공포하고, 상급 정부에 보고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부(文化部) 주도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부간 연석회의(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部際聯席會議)” 제도를 설립하여 보호사업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조정·해결하기로 하며,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여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와 검사·감독 제도를 마련하였다.¹⁰⁾

이러한 정부 주도 원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첫째, 문화부가 주도하여 사업부간 연석회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통일적으로 조정하며, 동시에 관련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업, 사회 단체 등을 널리 수용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시스템과 검사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지방 각급 정부는 보호 사업을 중요 사업일정과 국민 경제 및 사회적 어젠다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문화발전계획 요강에 포함시킨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구축, 유관 정책연구 등을 하고 있다. 셋째, 각급 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책 선도 등의 조치를 통한 개인·기업·사회단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팀 구성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교육을 통하여 기존 인력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의 인재를 활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넷째, 미성년자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0) 中國文明網

(http://www.wenming.cn/ziliao/wenjian/jigou/guowuyuan/201203/t20120312_552248.shtml)

각급 도서관·문화관·박물관·과학기술관 등 공공문화기관은 무형문화유산의 전파와 전시를 적극 전개한다. 또한 교육부문과 각급(류) 학교는 민족정신과 민간 특색을 나타내는 무형문화유산 내용을 교재에 편입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지식 보급 및 의식을 함양하여 사회 전반에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¹²⁾

Ⅲ.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제도

중국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가 급속도로 변천하는 국제화의 배경에서 전방위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형문화재 보호는 정부 주도로 제도화, 법제화, 지속가능화, 전국 각지의 문화부문 등에서 이와 관련된 보호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인지와 보호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은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고, 보호사업의 전반적인 진척도 활발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11)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http://www.gov.cn/gongbao/content/2005/content_63227.htm); 김우석,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에 관한 초보적 고찰”, 『중국학보』 제68집, 한국중국학회, 2013, 106-107면
- 12)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전통문화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전승의 단절 및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1950년대 학계는 식민주의 역사관 및 문화관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부터 무형문화유산 정책을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임돈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무형문화재의 보존현황과전승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제27집, 비교민속학회, 2002, 590면.). 또한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호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한 전수교육에 관한 규정이며, 국가가 전수교육의 실시를 보유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보유자는 국가와 동시책임이 있다. 1982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주도의 전수교육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94년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수교육을 보유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손봉숙,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2006, 16면.).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련 법 규정의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근거법으로 하고 있다. 헌법 제22조는 “국가는 인민을 위한 봉사, 사회주의를 위한 문학 예술사업, 신문방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 사업으로 발전한다. 명승고적, 진귀한 유물, 기타 중요한 역사 문화유산을 국가가 보호한다.”¹³⁾고 규정하고 있다.¹⁴⁾

1.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법률

(1) 행정입법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행정보호에 대한 규정이 발달하였다.

1) 무형문화유산법(非物質文化遺產法)

무형문화유산법의 제정은 행정적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문화부(文化部)는 1998년 전국인민대표대회교과문위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教科文衛委員會)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민간전통문화보호법(초안)《中華人民共和國民族民間傳統文化保護法》(草案)」¹⁵⁾을 작성하였다. 당시 언급한 ‘민족민간전통문화’는 이후의 ‘무형문화유산’과 거의 동일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

13) 中華人民共和國憲法 第二十二條 國家發展爲人民服務、爲社會主義服務的文學藝術事業、新聞廣播電視事業、出版發行事業、圖書館博物館文化館和其他文化事業，開展群眾性的文化活動。國家保護名勝古跡、珍貴文物和其他重要歷史文化遺產。

14) 한국은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헌법」 제9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15)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입법 관심은 199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9기 교과문위위원회(九屆全國人大教科文衛委員會)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법조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각 지방, 각 부문 및 전문가 학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국외 관련 법률의 참고 및 중국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지방 입법을 기초로, 2003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민간전통문화 보호법(초안)《中華人民共和國民族民間傳統文化保護法(草案)》」(이하 「초안」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이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교과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國人大常委會)에서 심의 하였다. 「초안」은 7장 60조로 구성되었으며, 초안은 특징은 크게 3가지로 계승자(繼承人)의 보호, 문화유산 자체의 보호, 정신적·경제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https://www.docin.com/p-2493048570.html>)

약」¹⁶⁾을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가 가입을 승인하면서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입법에도 영향을 받았다. 2005년 3월 국무원 관공청(國務院辦公廳)은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強我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意見)」¹⁷⁾을 발표하여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작 신고평정 잠정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作申報評定暫行辦法)」¹⁸⁾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6년 12월 문화

16)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1970년대에부터 논의 되었고, 특히 유네스코는 1971년 저작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하고자 하였으나, 민속을 저작권에 의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표준규범 제정 역시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유네스코는 저작권 측면을 제외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고,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를 채택하였다. 민속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최초의 국제 규범인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는 전통문화 및 민속의 형태를 ‘언어, 문학, 음악, 춤, 놀이, 신화, 의식, 관습, 수공예, 건축 및 여타의 예술’로 정의하였고, 이후 WIPO와의 업무 중복성이나 무형의 유산을 목록화하는 제도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회의를 통해 조율되면서 2003년 10월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초안은 수정 없이 채택되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40조로, 일반조항인 Part I(제1-3조) 목적과 정의, Part II(제4-10조) 주요 조직, Part III(제11-15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 Part IV(제16-19조) 국제적 차원의 조치, Part V(제19-24조) 국제협력의 내용, Part VI(제25-28조) 국제기금 출연과 운영, Part VII(제29-30조) 보고체계, Part VIII(제31조) 1997년 걸작 사업에 대한 전환 조치, Part IX로 규정하고 있다. 김지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한국의 「무형문화재법」에 대한 비교 분석적 고찰”, 『문화정책논총』 제35집 제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34-35면.

17)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強我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意見)」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의 목표와 가이드라인,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여, 사회의 노력을 통해 비교적 완비된 중국 특색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사회의 소중하고 위협에 처한 역사적·문화적·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도방침은 보호 위주, 응급처치 우선, 합리적 이용, 전승 발전이며, 기본 원칙은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책무 명확화, 협력 형성, 장기적 비전, 단계적 시행, 점면적 결합, 실효성 추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급, 성·시·현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작목록(代表作名錄) 체계를 세워 중국 특색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대표작목록은 국무원이, 성·시·현급 무형문화재 대표작목록은 동급 정부가 이를 승인하여 공포하고, 상급 정부에 보고해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부(文化部) 주도로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부 간 연석회의 제도를 설립하여 보호사업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조정·해결하기로 하며,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여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와 점검·감독 제도를 마련하였다.

18)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작 신고평정 잠정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作申報評定暫行辦法)」은 22조로 구성되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사업을 강화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작의 신고와 평정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2조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유물과 기타 중요역사문화유산을 보호”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국가

부는 「국가급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잠정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保護与管理暫行辦法)」¹⁹⁾을 시행하였다. 2008년 5월 문화부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사업의 대표 전승자 인정과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認定與管理的暫行辦法)」²⁰⁾을 공포하였다.

한편 문화부는 2005년 「무형문화유산보호법법(非物質文化遺產保護法)」의 입법을 위해 「무형문화유산보호법(심사 초안)」을 작성하여 2006년 9월 국무원에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민간전통문화보호법(초안)《中華人民共和國民族民間傳統文化保護法》(草案)」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후 몇 년 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본래 명칭에서 ‘보호(保護)’를 삭제하여, 2011년 2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무형문화유산법(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을 정식으로 심의 의결한 뒤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무형문화유산법」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고양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보존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²¹⁾

2) 기타 관련입법

중국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행정법규는 국무원(國務院)이 1997년 제정한 「전통공예미술보호조례(傳統工藝美術保護條例)」²²⁾이며,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밀접한 또 다른 법률은 「문화재보호법(文物保護法)」으로, 문화재보호 입법은 1930년 「고물보존법(古物保存法)」과 1931년 「고물보존법시행세

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작 신고평정 잠정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作申報評定暫行辦法)」을 제정하였다.

19) 「국가급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잠정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保護与管理暫行辦法)」은 28조로 구성되었으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수집, 보호, 전승(傳承)을 위한 법률로 2006년 10월25일 문화부 부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사업의 대표 전승자 인정과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認定與管理的暫行辦法)」은 18조로 구성되었으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사업의 대표적인 전승자를 지원하고 장려하여 전승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법률로 2008년 5월 14일 문화부 부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0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였다.

21) 高軒·伍玉娣, “非物質文化遺產的私權性及其體現—《以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的缺陷為視角”, 《河北學刊》, 32(5), 2012, 152-155頁.

22) 이 조례는 전통공예 미술을 보호하고 전통공예 미술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칙(古物保存法施行細則)」으로부터 볼 수 있다. 이후 1949년 신(新) 중국이 성립되면서 국무원(國務院)은 유적지 및 명승지의 보호에 관한 정령(政令)을 공포하였고, 1982년 “문화재보호법(文物保護法)”이 공포되었다.²³⁾

(2) 민사업법

현재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행정보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민사업법은 1990년 9월 제정하여 199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법(著作權法)²⁴⁾과 2008년 제정한 「국무원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 배포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印發國家知識產權戰略綱要的通知)」²⁵⁾로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문예와 지리적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후 민간문예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가 저작권국(國家版權局)도 2014년 「민간문학예술작품저작권보호조례(民間文學藝術作品著作權保護條例)」 (征求意见稿)²⁶⁾ 초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3) 신찬호, “중국의 인문유적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경희법학」 제53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60면.

24)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 이후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를 통하여 제1차 개정을 하였고, 2010년 2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통하여 제2차 개정을 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 제3차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약 10년 만인 2020년 11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的決定)”이 통과되어 제3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저작권법 제1조는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저작자의 저작권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민간문학,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찬호,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저작권문화」 8월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20면.

25) 「국무원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 배포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印發國家知識產權戰略綱要的通知)」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며, 전면적인小康社会(小康社會) 건설을 목표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http://www.gov.cn/zwgc/2008-06/10/content_1012269.htm)

26) 민간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민간문학예술작품의 질서 있는 사용을 보장하고, 민간문학예술의 전승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법(著作權法)」 제6조에 의하여 「민간문학예술작품저작권보호조례(民間文學藝術作品著作權保護條例)」 (征求意见稿)를 제정하였다(제1조). 「민간문학예술작품저작권보호조례(民間文學藝術作品著作權保護條例)」 (征求意见稿)에서 민간예술작품이라 함은 특정한 민족, 집단 또는 사회집단(공동체) 내의 불특정 구성원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창작되고 대대로 전승되며, 그 전통관념과 문화적 가치를 나타

2. 무형문화유산보호기구의 설립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의 핵심이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인식이 강조되면서 국가 및 지방정부에 상응하는 각급 보호기구를 설립하였다.

(1) 국가급 보호기구

무형문화유산법(非物質文化遺產法) 제6조²⁷⁾ 및 제7조²⁸⁾는 현급(縣級) 이상 인민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성(省)·시(市)(자치구;自治區)·현(縣)으로 구분하여, 국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대한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²⁹⁾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여,³⁰⁾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구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초 문화부(文化部), 재정부(財政部),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中國文學藝術界聯合會) 등이 공동으로 “중국민족민간문화보호사업(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을 실시하여 2020년 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보호업무의 과학화, 규범화, 제도화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³¹⁾

나는 문학예술의 표현을 말한다(제2조).

(<https://www.chinesefolklore.org.cn/web/index.php?NewsID=13219>)

27) 제6조 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보존 사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보호·보존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국가는 민족 지역, 변방 지역, 빈곤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보존 업무를 담당한다.

28) 제7조 ① 국무원 문화주무부서는 전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보존을 담당하고, 현급(縣級)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보존을 담당한다. ②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보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9) 非物質文化遺產法 第九條 國家鼓勵和支持公民、法人和其他組織參與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

30) 非物質文化遺產法 第八條 縣級以上人民政府應當加強對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宣傳，提高全社會保護非物質文化遺產的意識。

31) 全國政協文史和學習委員會專題調研組, “守護中華民族的精神家園”, 光明日報, 2008.12.09.

2005년 3월 국무원 관공청(國務院辦公廳)은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強我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意見)」을 발표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지침과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보호 사업의 임무, 목표, 요구와 조치 등에 대한 지도적 의견을 제시하였다.³²⁾ 2005년 6월 중앙선전부(中央宣傳部), 문화부 등 합동으로 「전통명절을 활용한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에 관한 의견(關於運用傳統節日弘揚民族文化的優秀傳統的意見)」을 공포하였다. 동년 12월 국무원은 「문화유산보호의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文化遺產保護的通知)」를 공포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을 “문화유산일(文化遺產日)”로 지정하였다.³³⁾ 중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문화부 주도하여 9개 부(部)와 위원회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부간 연석회의(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部際聯席會議)”를 설립하여 점차 과학적인 관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연석회의(聯席會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조정·해결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문화부는 “무형문화유산사(非物質文化遺產司)”를 설립하고 “중국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中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中心)”³⁴⁾를 설치하였다.³⁵⁾

2006년 7월 13일, “국가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 전문가위원회(國家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專家委員會)”가 설립되어, 전문가의 자문, 평가와 지도의 역할을 규범화하고, 과학적 관점으로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 9월 14일 “중앙기구편성위원회 관공실(中央機構編制委員會辦公室)의” 승인으로 “중국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中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中心)”가 국가급 전문보호기구로서 중국예술연구원(中國藝術研究院)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 되었다. 센터 설립 이후 31개 성 및 자치구(區), 직할시는 각각의 보호관공실(保護辦公室)이나 센터를 설립하여 각 시(市), 현(縣)에 보급하고 있는

(https://www.gmw.cn/01gmr/2008-12/09/content_867291.htm)

32) http://www.wenming.cn/ziliao/wenjian/jigou/guowuyuan/201203/t20120312_552248.shtml

33) 全國政協文史和學習委員會專題調研組, “守護中華民族的精神家園”, 光明日報, 2008.12.09.

(https://www.gmw.cn/01gmr/2008-12/09/content_867291.htm)

34) “중국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中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中心)”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의 정책 자문, 예술창작 전개, 예술이론 연구, 민족민간예술 연구의 전개, 전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사업 담당, 학술교류 및 전시활동 구성, 인재 육성 사업 담당, 문화부에서 위임한 기타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35) 全國政協文史和學習委員會專題調研組, “守護中華民族的精神家園”, 光明日報, 2008.12.09.

데,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체제 구축에 핵심적인 기구이다.³⁶⁾

무형문화유산 보호업무의 주관기관은 문화부이며, 2006년 12월 사회문화사(社會文化司) 직속의 무형문화유산처(非物質文化遺產處)와 2007년 6월 무형문화유산사(非物質文化遺產司) 설립되어, 이들 부처가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는 지방 문화행정 주무부서인 사회문화처(社會文化處)가 담당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부간 연석회의(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部際聯席會議)”는 문화부가 주축이 되어 재정부(財政部), 건설부(建設部), 국가문화재국(國家文物局)등 9개 부(部)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관련된 보호업무에 대한 정책지침 등의 수립과 검정(審定)을 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부간 연석회의(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部際聯席會議)”의 제도의 수립, 집중지도, 보호과정 중 중대한 문제를 처리한다.³⁷⁾

(2) 지방급 보호기구

“중국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中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中心)”설립에 따라 각 성(省)·자치구(區)·시(市) 및 현(縣)에서도 상응하는 업무 기구를 설립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지도하였다. 지방 각급의 보호기구에 대한 지도는 국무원에 의하여 시책에 의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을 지방의 일상 업무에 포함시킴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사업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 공공문화기구(公共文化机构) 및 과학연구기구

무형문화유산 보호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원기구의 참여가 필요하다.

공공문화기구는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공익적 기구로서, 문화

36) 王珊珊, “我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問題研究”, 齊魯工業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21頁.

37) 王珊珊, 前揭文, 21頁.

지식 보급, 선진문화 홍보 등의 역할을 하며, 주로 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등의 형태를 이룬다. 대중의 문화 수요와 기본적인 문화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공공문화기구는 민간문예, 전통연극, 민속행사 등 각종 표현 형식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을 촉진하는데 있다. 공공문화기구는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각종 문화유산을 보존·전파하는 기구이므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과정에서 각종 공공문화기구의 문화전파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을 강화하였다.

과학연구기구는 연구 역량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기구로, 각 지역 과학연구기구의 지원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예술연구원(中國藝術研究院)은 중국 유일의 예술연구 및 교육, 무형문화유산 보호, 문화예술 싱크탱크로 국가급 종합학술기구이다.³⁸⁾

3.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의 보호 강화

중국은 전국 단위의 통일된 무형문화유산 보호로 대폭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전승인의 보호에 대해 진전을 이루었다. 국무원은 2005년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항목으로 등재된 대표적 전승인에 대하여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文化遺產保護的通知)」를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표적인 전수자에게 계획적인 지원을 하고, 전수활동의 장려 및 지원을 하며,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계획적 지원을 요청하였다.³⁹⁾ 이후 문화부는 2008년 5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 상 대표 전승인 인정 및 관리 잠행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認定與管理暫行辦法)」을 통해 4차례에 걸쳐 1986명의 국가급 전승인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각 성, 자치구, 광역시와 그 지역 전승인의 인정과 명명 작업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상향식 국가, 성, 시, 현 등 4단계 전승인 보호제도가 정착되었다. 이후 2019년 11월 29일 문화관광부(文化和旅遊部)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전승인 인정 및 관리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

38) 2006년 8월 중앙기구편성위원회 반공실(中央機構編制委員會辦公室)의 승인을 얻어 중국예술연구원에 '중국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中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中心)'를 설립하였다.
(<https://www.zgysyzy.org.cn/>)

39) https://wlt.hubei.gov.cn/hbsfwzwhycw/zcfg/gwyjygbmwj/202005/t20200519_2278047.shtml

遺産代表性傳承人認定与管理辦法)」(文化和旅游部令 第3号) 40)공포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여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 상 대표 전승인 인정 및 관리 잠행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認定与管理暫行辦法)」을 폐지하였다.

(1)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 심사를 통한 전승인의 인정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의 전승활동을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목록의 등재신고와 심사과정을 함께 취합하였다.⁴¹⁾

무형문화유산은 현재 10개 분야에서 1,55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승인은 10개 분야별로 총3,068명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전승인이 전승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전승인은 국가, 성, 시, 현 등 4단계 전승인 보호제도가 있으며 지방정부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국무원은 관리 책임을 총괄한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은 국무원이 담당하고 성, 시, 현은 각급 지방정부가 담당한다.⁴²⁾

(2) 전승인 보호를 위한 정책 보장

문화부는 2008년 5월 시행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 상 대표 전승인 인

40)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전승인 인정 및 관리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性傳承人認定与管理辦法)」의 제정 목적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선양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전승하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의 전승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19-12/25/content_5463959.htm?ivk_sa=1023197a)

41) ① 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認定与管理暫行辦法 第三條 認定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項目代表性傳承人，應當堅持公開、公平、公正的原則，嚴格履行申報、審核、評審、公示、審批等程序。

② 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性傳承人認定与管理辦法 第七條 認定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性傳承人，應當堅持公開、公平、公正的原則，嚴格履行申報、審核、評審、公示、審定、公布等程序。(제7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전승인으로 인정되려면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신고, 심의, 평정, 공표,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42) 황자호, 김명상, 황경수,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제도 비교 연구: 무형문화유산법 및 전승 제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3권 제3호, 인문사회21, 2022, 973-974면.

정 및 관리 집행방법」에 따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 전승인에 대한 신고와 인정 과정, 권리와 의무, 전승인 공문서(檔案) 작성 등 실행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강화하였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 상 대표 전승인 인정 및 관리 집행방법」의 시행은 전승인의 확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촉진하고, 전승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은 농촌 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 및 민간 전승인들은 주로 농촌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으나 도농 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민족민간 전승인의 여건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지방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 상 대표 전승인 인정 및 관리 집행방법」 제12조⁴³⁾에 따른 경제관련 규정의 개선을 통하여 많은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전승되었다.

이후 2019년 11월 29일 공포한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전승인 인정 및 관리방법(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代表性傳承人認定与管理辦法)」도 전승인의 전승, 보급 등의 활동을 수행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⁴⁾

43) 제12조 각급 문화행정부분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의 대표적인 전승인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전승인의 후계자 전수 또는 교육훈련 활동을 지원 (2) 필요한 학습 활동 장소의 제공 (3) 관련 기술 자료의 정리 및 출판 자금 지원 (4) 항목 전승에 도움이 되는 전시, 홍보 및 기타 지원 제공

경제적 수입원이 없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항목의 대표적인 전승인에 대하여 소재지 문화행정부분은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조직과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44)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전승인 인정 및 관리방법」 제17조 문화관광 주관부분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전승인의 전승, 보급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필요한 전승 장소의 제공 (2) 후계자 전수, 예술개발, 교류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 (3) 지무형문화유산의 기록, 정리, 문서작성, 연구, 출판, 전람회 및 전시·공연 등의 활동 지도 및 지원 (4) 학습 및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5) 사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6) 전승, 보급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조치

경제적 수입원이 없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전승인에 대해서는 소재지 문화관광 주관부분은 유관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조직과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IV.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의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발전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제점

(1)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부족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민족문화 진흥, 국가 영향력 강화 및 사회 통합 촉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제적 이익에 의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방치하거나,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개발 및 활용을 하지 않고 단지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양적 증대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광개발의 관점에서 보호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산업자원을 경제효과와 연계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개발함으로써 각종 상업화의 수단을 이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위배되는 이용 및 개발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호라는 본질적인 요구를 소홀히 하여 대량의 무형문화유산을 파괴한다.⁴⁵⁾

(2) 법률 체계의 문제

중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실용적인 법규범이 부족하고 완전한 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1년 6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은 무형문화유산을

45) 王珊珊, 前掲文, 28-29頁.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거시성과 이론성이 강하여 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례는 대부분 정책적 지도의견 또는 원칙적 방법으로 입법 목적이 다르며, 보호방법과 원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⁴⁶⁾

(3) 전문 교육기구 및 전문 인력의 부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은 전문성이 매우 강하며, 지속적으로 계승되려면 전문적인 교육과 인재 양성이 필요하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무형문화유산법」 제34조 제1항은 “학교는 국무원 교육주관부분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⁴⁷⁾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등 교육기관은 평이하고 표면화된 민족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사업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⁴⁸⁾

(4) 전승인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부족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을 매개체로 하여 특정 집단과 특정 환경에 의존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전승'이며, 전승인은 보호과정에서 전승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환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여 무형문화유산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법」의 제정으로 전승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가 전승인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승인의 생활환경은 열악하다.⁴⁹⁾ 「무형문화유산법」 제30조⁵⁰⁾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

46) 牟延林、譚宏、劉壯 主編, 「非物質文化遺產概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0, 3頁.

47) 第三十四條 學校應當按照國務院教育主管部門的規定, 開展相關的非物質文化遺產教育.

48) 王珊珊, 前揭文, 31-32頁.

49) 매년 전승지원금은 2만 위안(元)이며, 후계자 교육 및 전시 지원, 전승장소 건립 및 기타지원으로 이루어 진다.

분은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대표 전승인을 지원하여 전승, 전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임의법규로서 지원에 강제성이 없다. 또한 「무형문화유산법」 제31조⁵¹⁾는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의 대표 전승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주관부분은 대표 전승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선 방안

(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하여, 중국은 많은 노력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시, 학술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알리고 있으나, 아직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생소한 만큼,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사회 전체에 전파 한다. 네트워크의 다양화 발전 추세에 따라 많은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응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다양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련 홍보를 수행하고 세대 전승에 역할을 하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만들고, 다자간 토론을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을 더욱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50) 第三十條 縣級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門根據需要，採取下列措施，支持非物質文化遺產代表性項目的代表性傳承人開展傳承、傳播活動：（一）提供必要的傳承場所；（二）提供必要的經費資助其開展授徒、傳藝、交流等活動；（三）支持其參與社會公益性活動；（四）支持其開展傳承、傳播活動的其他措施。

51) 第三十一條 非物質文化遺產代表性項目的代表性傳承人應當履行下列義務：（一）開展傳承活動，培養後繼人才；（二）妥善保存相關的實物、資料；（三）配合文化主管部門和其他有關部門進行非物質文化遺產調查；（四）參與非物質文化遺產公益宣傳。

非物質文化遺產代表性項目的代表性傳承人無正當理由不履行前款規定義務的，文化主管部門可以取消其代表性傳承人資格，重新認定該項目的代表性傳承人；喪失傳承能力的，文化主管部門可以重新認定該項目的代表性傳承人。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라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으며, 전문가 등이 무형문화유산을 객관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도 언제든지 열람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를 통한 계승을 할 수 있도록 한다.⁵²⁾

(2) 법률 체계 개선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을 때 입법이 중요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가는 관련 보호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률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호 규정과 법률을 제정하여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 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전승인과 후계자의 권리에 대하여 기본 이익을 보호하고, 기존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관련 법률을 보완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다양한 법률이 발전된 사회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도록 법률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련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 시스템을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인류 전체의 공동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 관례 및 규범이 연계되어 국제적인 의의를 지닌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⁵³⁾

(3) 교육 강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문화강국 건설의 중요 부분으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자질과 사회 전체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

52) 王珊珊, 前掲文, 37-38頁.

53) 中國社會科學院知識產權中心編, 「非物質文化遺產保護問題研究」, 知識產權出版社, 2012, 26頁.

등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참여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학은 교차학문으로서 민속학, 역사학, 관광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기초이론과 정책과정, 국외문화비교과정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여야 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지식 강좌, 각 지방 무형문화유산의 파악 및 보호의 문제를 논의 하여야 한다.⁵⁴⁾

(4) 전승인 양성

전승인의 보호와 양성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서 전승인 양성은 크게 대표 전승인과 일반 전승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급 문화행정부문은 대표 전승인의 후계자 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반 전승인은 대표 전승인의 예비 후보로서 젊은 세대로서, 전승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을 선별하여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그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⁵⁵⁾

전승인 보호와 양성을 위해서는 전승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전승인의 뛰어난 기술과 그 기술이 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후계자를 합리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중국은 1986년부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전승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은 10개 분야에서 1,55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승인의 수는 10개 분야별로 총 3,068명의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으로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⁵⁶⁾

그러나 여전히 소수이기 때문에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인정 범위를 축소한 조건을 완화하고 후보 범위를 확대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습득한 더 많은 일반 대중이 인정 과정에 참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정의 효율성을 높여 전승인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인정 받는 것 외에 정부와 관련 부서는 민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에 대한 인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인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인정시간을 단축하며 인정의

54) 王珊珊, 前掲文, 41頁.

55) 徐輝鴻, “非物質文化遺產傳承人的法律保護機制探討”, 「理論導刊」, 2008, 93頁.

56) 황자호, 김명상, 황경수, 전계논문, 973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각 지방 정부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의 후계자 인정과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및 관련 보호 이념은 아직 사회에 완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근본적인 개선은 정부와 민중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법」 제30조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대표 항목의 대표 전승인을 지원하여 전승, 전파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법규로서 지원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원 의무를 강제하여야 한다.⁵⁷⁾

V. 결 론

중국은 세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이 가장 풍부한 나라중 하나이며 그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활용에 있어서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무형문화유산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승과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서는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잘못하면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은 점차 약화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민족, 국제사회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다.

무형문화유산 전반에 걸쳐 생태환경의 구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57) 王珊珊, 前掲文, 43-44頁.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 전체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생태환경 구축은 각급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무형문화유산의 홍보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지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과 한국의 「무형문화재법」 에 대한 비교 분석적 고찰”, 「문화정책논총」 제35집 제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김우석,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에 관한 초보적 고찰”, 「중국학보」 제68집, 한국중국학회, 2013.
- 손봉숙,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2006.
- 신찬호, “중국의 인문유적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경희법학」 제53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신찬호,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저작권문화」 8월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 임돈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무형문화재의 보존현황과 전승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제27집, 비교민속학회, 2002.
- 황자호, 김명상, 황경수,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재 제도 비교 연구: 무형문화재법 및 전승제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3권 제3호, 인문사회21, 2022,
- 張洁, 「非物質文化遺產法律保護研究」, 中國法制出版社, 2018.
- 王文章, 「非物質文化遺產概論」, 文化藝術出版社, 2006.
- 向云駒, 「人類口頭和非物質遺產」, 宁夏人民教育出版社, 2004.
- 中國藝術研究院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國家中心編, 「中國民族民間文化保護工程普查工作手冊」, 文化藝術, 2005,
- 王鶴云、高紹安. 「中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法律机制研究」. 知識產權出版社, 2009.
- 周方著. 「傳統知識法律保護研究」, 知識產權出版社. 2011.
- 周耀林, 王咏梅, 戴吻, “論我國非物質文化遺產分類方法的重构”, 「江漢學術」 第31卷 第2期, 2012.
- 馮曉青. 非物質文化遺產与知識產權保護. 「知識產權」. 2010.

高軒·伍玉娣, “非物質文化遺產的私權性及其體現—《以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的缺陷爲視角”, 《河北學刊》, 2012.

全國政協文史和學習委員會專題調研組, “守護中華民族的精神家園”, 《光明日報》, 2008.12.09.

王珊珊, “我國非物質文化遺產保護問題研究”, 齊魯工業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牟延林、譚宏、劉壯 主編, 「非物質文化遺產概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0.

中國社會科學院知識產權中心編, 「非物質文化遺產保護問題研究」, 知識產權出版社, 2012,

徐輝鴻, “非物質文化遺產傳承人的法律保護機制探討”, 「理論導刊」, 2008.

盤淼, “完善非物質文化遺產保護的地方性立法體系”. 「法制與社會」, 2014.

[李昕. “淺議非物質文化遺產傳承人的認定制度”, 「法制博覽」, 2014.

劉永明, “從建設生態文明角度審視非物質文化遺產保護”,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4.

榮浩, “非物質文化遺產旅游產品設計研究”, 「現代高質工業」, 2014.

古俊梅, “中國傳統文化傳承與非遺保護研究”, 「文化創意」, 2021.

www.wenming.cn

www.gov.cn

www.chinesefolklore.org.cn

www.gmw.cn

www.zgysyjy.org.cn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hina*

Shin, Chan-Ho**

China is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types and contents are diverse and complex, so it has no choice but to have complexity and diversity in the protection, transmiss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important in many ways, including transmitting the traditions of excellent culture of the nation, community, and region, preserving the diversity of human culture, externally demonstrating the creativity of the people,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and promoting human communic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mutual unity.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continuity of national civilization only with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continuity of traditional civilization must be handed down jointly with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handed down without a certain shape, so it is easy to damage, deteriorate, and deform because it is protected and transmitted by humans.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ystem for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essential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ientific, rational, an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7S1A5B5A02023842)

** Ph.D. in law, Researcher, Law Research Institute Kookmin University.

sustainable transmiss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f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wrong, precio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likely to gradually weaken and disappear. Although China's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achieved to some extent, problems exist throughout the process, and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protec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achieved.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ey Wo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tangible cultural properties.